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1 기본 현황

###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총사업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조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2,140천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22,14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0 %</td> <td></td> </tr> </table>	총	(국비)	(사비)	(보조율)	(구비)	122,140천원		122,140천원	0 %	
총	(국비)	(사비)	(보조율)	(구비)							
122,140천원		122,140천원	0 %								
사업내용	○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자치구 재배정)										

###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자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상	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이승복 2133-3590	유준수 2133-3625	김명수 2133-3628

## 2 예산 설명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x-)
계	(x-) 125,000	(x-) 122,140	(x-) 122,140	(x-)	(x-)
사회보장적수혜 금	(x-) 125,000	(x-) 122,140	(x-) 122,140	(x-)	(x-)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회보장적수혜금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 122,140천원

**3** 사업 설명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 최소화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사업내용

- 구제대상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1,2,3급,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규 모 :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석면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
- 총사업비 : 122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2백만원)

추진경위

- '09. 07. 10.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자정책조정회의)
- '09. 12. 03. : 『석면피해구제법』 (안) 정부의견 국회 제출
- '09. 12. 22. :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 '10. 02. 26. : 국회 본회의 통과
- '10. 03. 22. :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 '11. 01. 01.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해당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자치구) ⇒ 인정신청 및 접수(자치구) ⇒ 심사(한국환경공단) ⇒ 지급(시·자치구)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22,140	
기본계획 수립	2017.01~2017.01	0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017.01~2017.12	122,140	요양급여(수시지급), 요양생활수당(매월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연1회 지급), 특별장의비(연1회 지급), 구제급여 조정금(연1회 지급), 장의비(연1회 지급)
정산	2017.01~2017.12		

**4 사업 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피해인정자 : 총47명 악성중피종 11명, 원발성폐암 9명, 석면폐증 22명</li> <li>○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 총 166명 지급 - 1,793백만원(기금 90%, 시비 7%, 구비 3%), 시비 122백만원</li> </ul>
2015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피해인정자 : 총41명 악성중피종 10명, 원발성폐암 12명, 석면폐증 19명</li> <li>○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 총 122명 지급 - 1,254백만원(기금 90%, 시비 7%, 구비 3%), 시비 88백만원</li> </ul>
2016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피해인정자 : 총26명 악성중피종 5명, 원발성폐암 10명, 석면폐증 11명</li> <li>○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 총 148명 지급 - 1,430백만원(기금 90%, 시비 7%, 구비 3%), 시비 98백만원</li> </ul>

□ 향후 기대효과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로 환자의 부담경감
- 신속하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신뢰행정 구현

**5** 최근 3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 150,000	(x-) 0	(x-) 0	(x-) 150,000	(x-) 121,579	(x-) 0	(x-) 28,421
2014	(x-) 150,000	(x-) 0	(x-) 0	(x-) 150,000	(x-) 122,055	(x-) 0	(x-) 27,945
2015	(x-) 125,000	(x-) 0	(x-) 0	(x-) 125,000	(x-) 87,767	(x-) 0	(x-) 37,233

## 참 고 자 료

### □ 연도별 구제급여 수급자

연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석면과해 인정자	특별유족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2011	41명	19명	19명	3명
2012	131명	34명	89명	8명
2013	162명	49명	100명	13명
2014	166명	70명	86명	10명
2015	122명	86명	26명	10명
2016.9	137명	108명	24명	5명

### □ 연도별 구제급여 지급액

연도	서울시 부담금 재배정액 (단위:원)			
	계	석면과해 인정자	특별유족 인정자 (특별장외비 포함)	구제급여 조정금 (장외비 포함)
2011	38,859,390	8,633,870	20,344,720	9,880,800
2012	95,793,230	14,022,250	67,880,220	13,890,760
2013	121,579,260	20,774,310	76,103,360	24,701,590
2014	122,055,380	38,864,990	67,330,370	15,860,020
2015.	87,767,490	51,049,240	21,538,390	15,179,860
2016.9	83,663,790	53,683,140	20,457,960	9,522,690

## 2017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2016.07.21)

###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종괴종	1,336,8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small>		2,524,5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small>		37,868,400원 <small>(장의비의 1,500/100)</small>			
	기금	지자체			기금	지자체		
1,203,180원    133,680원		34,081,560원    3,786,840원						
원발성 폐암	1,336,8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small>				2,524,5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small>		37,868,400원 <small>(장의비의 1,500/100)</small>	
	기금	지자체					기금	지자체
1,203,180원    133,680원		34,081,560원    3,786,840원						
미만성 흉막비후	962,54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small>		2,524,5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small>				18,934,200원 <small>(장의비의 750/100)</small>	
	기금	지자체					기금	지자체
866,290원    96,250원		17,040,780원    1,893,420원						
석면 폐증	641,69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small>				2,524,5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small>		12,622,800원 <small>(장의비의 500/100)</small>	
	기금	지자체					기금	지자체
577,530원    64,160원		11,360,520원    1,262,280원						
3급	320,84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small>		2,524,560원 <small>(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small>				6,311,400원 <small>(장의비의 250/100)</small>	
	기금	지자체					기금	지자체
288,760원    32,080원		5,680,260원    631,14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7.1.1 ~ 2017.12.31.

## 2015년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중

구 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중	비 고 (부담비율-시:구)
전국	<b>75.47</b>	<b>32.6</b>	
서울시 포함 전체평균	<b>56.82</b>	<b>49.98</b>	산술평균값
자치구 평균	<b>55.78</b>	<b>50.66</b>	산술평균값
본청	82.98	32.84	
종로구	69.41	34.71	<b>7:3</b>
중구	69.58	34.82	<b>7:3</b>
용산구	62.27	42.52	<b>7:3</b>
성동구	57.77	44.93	<b>7:3</b>
광진구	59.57	45.89	<b>7:3</b>
동대문구	53.04	51.88	<b>7:3</b>
중랑구	52.04	56.65	<b>7:3</b>
성북구	50.93	53.73	<b>7:3</b>
강북구	51.98	55.27	<b>7:3</b>
도봉구	53.45	51.83	<b>7:3</b>
노원구	44.63	61.11	<b>7:3</b>
은평구	48.27	58.94	<b>7:3</b>
서대문구	55.70	47.0	<b>7:3</b>
마포구	59.06	49.02	<b>7:3</b>
양천구	54.38	53.17	<b>7:3</b>
강서구	47.94	62.40	<b>7:3</b>
구로구	51.15	55.65	<b>7:3</b>
금천구	56.72	52.61	<b>7:3</b>
영등포구	57.69	49.57	<b>7:3</b>
동작구	51.49	55.93	<b>7:3</b>
관악구	50.78	55.88	<b>7:3</b>
서초구	62.87	42.40	<b>7:3</b>
강남구	66.27	45.71	<b>7:3</b>
송파구	55.45	51.11	<b>7:3</b>
강동구	51.98	53.86	<b>7:3</b>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구제급여 부담비율

구 분	부담비율(시 : 구)	비 고
해당 회계 연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